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

1. 서설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주민등록법은 1962년5월10일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되었지만, 주민등록제도는 1942년도부터 시작된다. 즉, 1942년9월26일 朝鮮寄留令 및 기류수속규칙을 제정(1942. 9. 26 制令 제32호)하여 본적지 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부·읍·면(※주1)에 비치된 기류부에 등재하도록 하였으며, 1962년1월15일 제정된 寄留法(법률 제967호)에서는 본적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신고하도록(임의신고)하였고, 임의신고로 인하여 주민등록의 이중등록이 가능하였으며, 시장·군수가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법원이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제도는 행정을 효율화하고, 주민의 편리성을 높여,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으로 인한 개인정보누출 등이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1년3월29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2011년9월30일부 시행)되었고, 2013년8월6일에는 동법을 개정(2014년8월7일부 시행)하여 주민번호에 한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수집도 금지시켰으며, 동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주민번호수집법정주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 전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민등록번호가 행정을 효율화시키며 주민의 편리성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역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1)일본통치시대의 행정구획의 호칭이다. 부는 현재의 「시」, 읍은 인구 2만부터 5만까지의 소도시를 말하며, 면은 현재의 「촌」에 해당 한다.

2. 주민등록법

행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동태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된 법률(1962. 5. 10. 법률 제1067호 제정)이다.

(1) 주민등록법 정의 및 연혁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일부 개정 2009.4.1 법률 제9574호). 전문 4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62년5월10일 주민등록법 제정 이전에는 朝鮮寄留令 및 기류수속규칙을 제정(1942. 9. 26 制令 제32호)하여 본적지 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부·읍·면에 비치된 기류부에 등재하도록 하였으며, 1962년1월15일 제정된 寄留法(법률 제967호)에서는 본적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신고하도록(임의신고)하였고, 주민등록의 이중등록이 가능하였으며, 시장·군수가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법원이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2) 주민의 등록 및 정정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관장하며, 그에 대한 지도·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거주지)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신고는 세대주 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및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3) 신고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등록기준지, 주소,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다만 이중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4) 주민등록사항 관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6) 주민등록증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3. 주민등록번호와 행정의 효율화

주민등록번호제도는 행정을 효율화하고, 편리성을 제고시키며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즉, 행정기관과 각종 지방공공단체 등과의 업무연계로 불필요한 작업을 줄일 수 있으며, 행정수속의 간소화로 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제도에는 연금, 노동, 의료, 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개인이 회사에 입사를 할 때 4대 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이란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고용보험 ④산재보험을 말하며, 각 보험을 취급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고용 노동청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서류제출 시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급여 등을 기입하게 되며, 매월 원천징수 된 국민연금 등은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연금을 불입한 자로서,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수령하게 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의료제도와의 관계

개인이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동의서에 동의를 한 후 의료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및 민감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상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음의 목적에 따라 수집 및 이용, 제공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진료, 건강검진, 예약 조회 및 진료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
- 진료비청구, 수납, 환불 등의 원무서비스
- 진료비계산서, 내역서, 제증명서 발송
- 온라인/오프라인 검사 수탁, 외부검사의뢰
- 교육,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석자료
-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에 명기된 관계기관에 정보 제공 등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정보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자의 동의하에 정보제공 및 취급위탁업체에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에 명시되는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진료신청서 내 기재항목(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등)

(3)조세제도와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임금대장”작성 시,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주민번호 처리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1)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세무서에 신고하는 각종 서류,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만 기입하여 신고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납부서 용지에도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이 납세사실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도 좋은지 확인한 후 비공개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만 기입하여 발급, 교부해 줍니다.

2)비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류, 예를들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납부서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민등록번호에는 한 개인의 생년월일 및 성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터넷사이트는 거의 예외 없이 회원가입 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자신의 실명을 숨기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팅사이트와 게임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등 관련 개별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무료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만한 법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관련 국외현황을 살펴보고,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유형과 문제점 및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 내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관련 국외 현황

1) 주민등록번호 체계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등록법의 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1975년 주민등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생년월일, 성별, 지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된 13자리의 숫자체계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담고 있는 개인정보를 살펴보면 앞의 여섯 자리 숫자는 생년월일을 나타낸다. 뒤의 7자리 숫자 중 맨 앞자리 숫자는 출생연도와 성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900년대에 태어난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2000년대에 태어난 남자는 3번, 여자는 4번이 부여된다.

두 번째 자리부터 다섯 번째 자리까지의 네 자리 숫자는 최초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의 고유번호이다. 여섯 번째 자리는 신고순위이다. 즉, 신고당일 같은 지역의 같은 성(姓)을 쓰는 사람들 중에 몇 번째로 신고가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숫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여부를 증명해주는 오류수정번호이다.

주민등록번호가 640713-1018439 라고 가정하자. 이 중에서 맨 뒷자리 수(9)를 빼면 나머지 번호 640713-101843이 남게 된다. 각 번호 별로 2, 3, 4, 5, 6, 7, 8, 9, 2, 3, 4, 5를 곱하고(즉 $6*2, 4*3, 0*4, 7*5, 1*6, 3*7, 1*8, 0*9, 1*2, 8*3, 4*4, 3*5$), 각각의 합을 더하면

(즉 $12+ 12,+ 0+ 35+ 6+ 21+ 8+ 0+ 2+ 24+ 16+ 15$) 151이라는 값이 나온다.

151를 11로 나누면 몫이 13, 나머지가 8이 나오는데, 몫을 버리고 11에서 8을 다시 빼준다(즉, $11-8=3$). 이렇게 해서 나온 3이라는 숫자가 주민등록번호의 맨 뒷자리 번호와 일치해야만 이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른 번호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3은 위에서 가정한 주민등록번호 맨 뒷자리 9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주민등록번호는 허위이다.

2) 국가신분제도에 관한 국외 현황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민고유번호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도 신분을 나타내는 일련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적사항을 추출하거나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연결고리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 중 전국민신분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전국민신분증 제도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주민등록제도에서는 전국민에게 개인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전국민 신분증 제도는 카드 자체의 일련번호만을 부여하고, 분실 등으로 인해 카드를 재발급 받게 되면 일련번호 자체가 변경된다. 미국은 주거등록제도와 개인식별번호, 국가신분증 제도가 없다. 미국에서는 출생기록이 곧 국적기록이다. 출생, 사망, 혼인 등 사건별로 기록부가 작성되고 개인별로 기록되므로 철저한 사건별·개인별 기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신청지역, 발급그룹, 발급순서를 나타내는 각 3자리 숫자 총 9개로 이루어진 사회보장번호는 결과적으로 강제적인 주민등록과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유형과 문제점

1)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유형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미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회원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다음의 세가지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이다. 그러나, 피도용자와 전혀 관련 없는 제 3자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하는 경우도 많다.

둘째,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이것이 피도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이다. 참고로 현재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서 수십 종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다운받아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미성년자가 성인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해 불법으로 휴대폰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셋째,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해당 사이트와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자동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과 관련이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문제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만들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우연한 기회에 입수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한번 도용되면 그만큼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의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 제도

1) 개인정보보호법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목차 2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

넷 무료사이트에 가입하면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거나, 유료사이트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자신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실상 동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조는 해킹이나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등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시키거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서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사업자는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당해 소비자에 대한 관련거래기록을 제공하여야 하며,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및 도용에 의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법에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자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및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4)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개선방안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회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본인 여부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의 ID 및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현재

로서는 가장 일반적인 해결방법이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무료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도용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를 찾아내기를 원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생성하거나 도용한 사람들은 회원가입 시 다른 신상정보도 허위로 기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IP 추적 등을 통해 도용자를 찾아내는 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시민단체들은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Privacy)를 보호하려면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 요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통합·프로파일링(profiling)하는 수단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을 별론으로 하고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인터넷사이트는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이와 더불어 실명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번호를 매칭(matching)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는 한 개인의 생년월일 및 성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별 생각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내주고 있다.

그러나 무료사이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며,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나 예금결제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외 무료 인터넷사이트의 경우 타겟마케팅에 필요한 이름과 아이디, 주소와 연령대, 직업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며 그 정보의 정확성을 의무화하지도 않는다.

유료사이트 또는 금전거래가 주축인 사이트도 신용카드번호에 관한 정보만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뿐이다. 따라서, 금전거래가 수반되는 쇼핑몰이나 신용거래가 수반되는 대출, 보험, 은행 등의 특정 서비스를 제외한 무료사이트의 경우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만, 게임·채팅사이트의 경우에는 도용자의 대부분이 초·중·고생임을 감안하여 처벌규정의 도입에는 신중한 검

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처벌규정을 신설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 정도가 타당할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자는 피도용자의 친족이나 지인 등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등 전문 7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5조).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제9조).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제19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제23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제29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34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제35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제36조).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제4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제65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중단하거나 마비시키는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및 추진경과

1) 법 제정 취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5)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 한해 동안 신세계몰 390만건, 현대캐피탈 175만건, 한국엡손 35만건, SK컴즈 3,500만건, 넥슨 1,320만건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접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3) 추진경과

①개인정보보호법 제정(2011. 9. 30)

②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2013. 8.6 개정, 2014. 8. 7 시행)

③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2014. 3. 24 개정, 2016. 1. 1 시행)

④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 기능강화(2015. 7. 24 개정, 2016. 7. 25 시행)

⑤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2016. 3. 2 의결)

(2) 개인정보 관련 타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분야의 일반법이다. 그러므로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즉 사회전반의 개인정보보호

를 규율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 개인 등이 모두 적용대상자이다.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다. 즉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의료법, 전자금융거래법, 고등교육법, 보험업법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우선한다. 또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보호수준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조문별로 개별법을 적용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행으로 개별법에서 다루지 않는 사각지대를 포괄 규율하고 있다는 말이다.

(3) 법률 적용대상 및 범위

- 1) 법 시행 이전에는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적용하였다.(약 51만)
즉,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여행사, 백화점 등 준용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이 있었다.
- 2) 법 시행 이후에는 적용대상이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그러므로 포털, 금융기관,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 360만 사업자 및 부처, 지자체, 공사, 공단, 학교 등 20만 공공기관이 모두 적용대상자이다.
- 3) 적용범위는 전자파일 외에 동창회 명부, 민원서류, 이벤트 응모권 등 수기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도모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수집이용(법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법 제3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법 제31조)의 적용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위원회 기능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개선, 권고 등에 대한 심의의결과 오·남용 감시, 이행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 심의의결사항

- ①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각 부처의 시행계획
- ② 개인정보보호 관련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③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공공기관간의 의견 조정
-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운용
- 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시정 조치 권고
- ⑥ 기타 관계 법령과 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등
- ⑦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과 국회보고
- ⑧ 대통령,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제기한 사항

3) 조사연구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 ②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 등 조사·분석
- ③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 보호 주요동향 연구
- ④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 연구

(5) 주요개정사항

1)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 (2016.3.29)

*법 개정 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법 24조)

- 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법 개정 후

법24조의 2 신설, 주민번호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수집도 금지

- ①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법 제24조의2 제1항 1호)
-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호)
- ③ 위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의2 제1항3호)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이 근절되도록 근거 법령 일제정비 추진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이 근절되도록 근거 법령 일제정비 추진하여 주민번호 요구 법정서식 정비 등 관행적인 주민번호 수집 근절

2) 주민번호 의무적 암호화(2016.1.1)

* 법 개정 전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아래의 경우 의무적 암호화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 ②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에 저장하는 경우
- ③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위험도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 여부 및 수준을 선택적 적용 가능하다.

* 법 개정 후

주민번호는 보관 시 의무적 암호화 조치하여야 한다.(제24조의2 제2항)

①100만명 미만 주민번호 보관 : 2016.12.31.까지 암호화(2017.1.1.적용)

②100만명 이상 주민번호 보관 : 2017.12.31.까지 암호화(2018.1.1.적용)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미 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2016.7.25.)

법정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39조, 제39조의2)

<양 제도 비교 및 도입방안>

구분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요건	기업의 고의·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기업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의 없이 활용하여 피해발생
입증책임	기업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입증책임 면제	기업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 피해액은 피해자가 입증
구제범위	사실상 피해입증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모두 포함
배상규모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실제 피해액의 3배 이내 배상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 이후 유출 사고	

4) 개인정보 출처고지 의무화(2016.3.2)

*법 개정 전

①민감정보는 고시에서 바이오 정보만 암호화 의무

②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의무만 부과

③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요구 있으면 출처 고지 의무

④주민등록번호는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처리 가능

*법 개정 후

①민감정보는 모두 반드시 암호화

②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행자부가 정기적으로 감독

③3차 제공, 위탁 등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 의무화

④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시행령에 근거가 있어야 처리가능(시행규칙 제외)

(6) 개인정보 환경

1) 유출, 침해의 초 대량화

개인정보 대량집적에 따라 유출사고도 초 대량화(1~2천만건)되고 있고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 대상인 시대이다.

2) 새로운 기술환경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CCTV, 위치정보,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가 이슈화 되고 있다.

3) 개인정보 취급분야 확대

기존의 정보통신업 외에 기타 사업분야, 비영리단체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 정보 주체의 인식 변화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민원의 지속적 증가 등 법원에서도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7) 개인정보 정의

개인 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주민번호, 영상정보, 음성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성명, 전화번호, e-mail 등도 포함한다. 즉 성명, 전화번호, 주소와 같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8) 개인정보 수집·이용기준

다음 각 호 어디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획득 시 고지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권과 동의 거부 시 불이익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3)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5)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

(9)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1)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법 제30조제1항, 영 제31조제1항)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사항>

- ①개인정보 처리목적
- ②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③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④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⑤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⑥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 ⑦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⑧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불가시 공개방법 (영 제31조제3항)>

- ①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②관보, 신문 게재
- ③연 2회 이상 발생하는 간행물, 소식지 등에 게재
- ④재화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에 게재하여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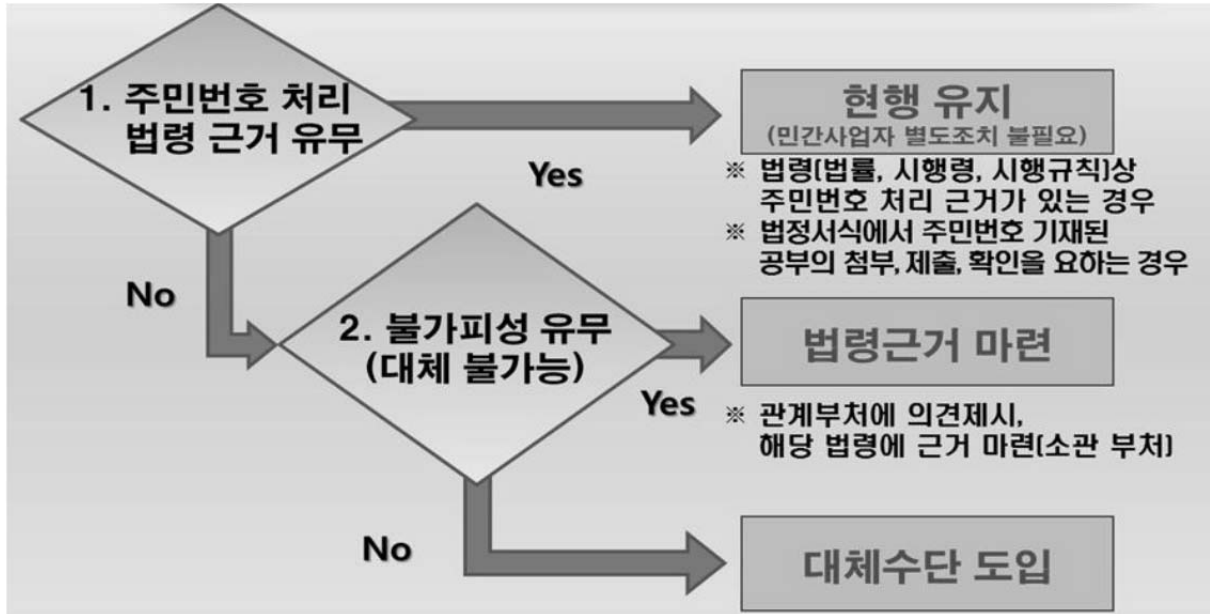
3) 처벌규정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013년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국민카드는 유출행위가 2회여서 가중처벌 되었음

◆ 참고 :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절차

1. 주민번호 수집, 이용 원칙적 금지 :미수집 또는 대체수단 도입 등
2. 불가피한 경우 법령근거 마련 및 필요 최소한 이용



◆ 참고 :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절차 사례

※ 직원 채용 시 주민번호 처리

사례		근로계약 체결 위해 주민번호 처리
검토	1. 주민번호 처리 법령근거 유무	법령근거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4대 보험 가입 위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임금대장” 작성 시, 소득세법상 소득세 원천징수 위하여 임직원의 주민번호 처리 근거 명시적 규정
	2. 불가피성 유무	불가피성 있음 ⇒근로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직원 주민번호 처리는 불가피
조치사항		별도조치 불필요 (현행유지) ※ 채용 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번호 처리 가능 입사지원 단계에서는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10)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 법 개정(2016.1.1 시행)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번호는 내/외부망에 저장 시 암호화(법 제24조의2)

1) 주민번호는 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내/외부망에 저장 시 암호화 조치 :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한다.

⇒ 처벌 규정 : 주민번호 미 암호화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 암호화에 따른 주민번호 유출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령 개정안 제21조의2)

①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7년 1월 1일

②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2018년 1월 1일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자 수칙

<사업자 준수사항>

(1)개인정보는 동의 받아 수집하세요

회원, 멤버십 가입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동의를 받으시고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거부 시 불이익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서비스나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세요

개인정보는 서비스나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필수 정보만 수집하며, 주민등록번호나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3)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반드시 문서로 하고 위탁사실을 공개하세요

대리점, 위탁점, 콜센터 등 외부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에 위탁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5)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보관하세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접근통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보관장소의 출입통제 또는 잠금장치 등을 마련합니다.
⇒ 상시 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내부관리계획 수립면제

(6)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불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주민등록법

[2017.5.30] [법률제14191호, 2016.5.29,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09.4.1.>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감독 등)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사용

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제5조(경비의 부담)

-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시·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 ③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헌법불합치, 2013헌바68, 2015.12.23.,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시행일 : 2017.5.30.] 제7조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

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7조의2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3.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②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적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정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7조의3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7조의4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변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 및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⑦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촉한다.
- ⑧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 ⑨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
 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
 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 ⑩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⑪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⑫ 변경위원회와 제11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7조의5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1.>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4.1.21.>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11조(신고의무자)

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배우자
-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나.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다.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2007.5.17.>

②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계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④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제목개정 2007.5.17.]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①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제14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제목개정 2007.5.17.]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고의 방법과 신고 서식 등)

-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 ② 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②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행정상 관리주소의 지정, 재외국민 구분 등록·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목개정 2014.1.21.]

제19조의2(자료의 제공)

-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자료 및 재외국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은 국내거소신고자 관리 또는 재외국민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⑧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전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는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1. 재해·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2. 세대주가 변경된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시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④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은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1.19.>

⑦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⑧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金)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2.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②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기준·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30.]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2016.5.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 세대주의 배우자
 -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④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⑥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9.4.1.>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⑧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 2016.11.30.] 제29조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11.19.>

⑤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① 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를 관리할 때에 주민등록표가 멸실, 도난, 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표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유 또는 이용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33조 삭제 <2009.04.01>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다른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2008.2.9 2013.3.23 2014.11.19>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 전산조작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6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호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2017년1월1일
2.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17년1월1일[본조신설 2016.05.29]

제36조의3(비밀유지 등) 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36조의3

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36조의4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1.21., 2016.5.29.>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일 : 2016.11.30.] 제37조제5호

제38조(벌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5.20.>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은 때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때
3. 제37조제2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전문개정 2008.12.26.]

제40조(과태료)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16.5.29.>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16.5.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6.5.29.>

[시행일 : 2017.5.30.] 제40조